

# 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정 2004.03.19.  
 개정 2011.08.22.  
 개정 2012.07.01.  
 개정 2016.03.01.  
 개정 2019.09.01.  
 개정 2020.04.13.  
 개정 2022.06.13.  
 개정 2025.03.10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,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은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·공유·확산을 위한 지식학연 간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.

**제3조(업무)** 산학협력단은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, 조정, 운영에 관한 업무
2. 산학협력사업, 국책사업의 수주 및 운영 지원 업무
3.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4.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5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
7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8.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홍보
9.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·기자재·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
10. 대학 구성원의 창업지원 및 대학 교지 내·외에 설치·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관리
11. 지식학연 간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등 지역상생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업무
12. 산학협력 관련 공유·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
13.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업

## 제2장 조직 및 구성

**제4조(단장)** ① 단장은 총장이 임면하되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② 단장은 산학협력단 대표이사가 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4조의2(부단장)**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산학협력자문위원)** ① 대내·외 지산학연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산학협력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자문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조직)** 산학협력단은 정관에서 정한 조직 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“사업단”, “위원회”, “팀”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 운영)**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의 2조(실무위원회 운영)**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실무 논의 및 수행을 위해 “실무위원회”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임명직은 산학협력단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, 스쿨별 위원 배분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교직원의 채용 등)** ① 산학협력단은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여 정관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준하여 관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에 대하여 단의 교육, 연구,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급여, 근무조건 등 계약 조건은 수행사업 예산과 지침에 근거하여 단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창업보육센터의 운영) 삭제**

**제10조(연구지원센터의 운영) 삭제**

**제10의 2조(산학협력단의 운영)** ① 산학협력단은 정관에 정한 행정조직으로 구성되며, 조직 특성에 따라 스쿨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 산하 행정조직의 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별도 지정한다. 단, 연임가능하다.

③ 행정조직은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둘 수 있으며, 개별 조직은 자체규정을 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행정조직은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별도 지정한다.

**제11조(사업계획과 결과)** ①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회계연도 시작 전과 종료 전에 사업계획과 사업결과를 보고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당해연도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전반 및 산학협력단과 산하 행정조직의 사업목표, 조직규모, 예산,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며,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③ 사업결과는 주요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며,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④ 산학협력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변경할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평가와 인센티브제도)** ① 산학협력단은 연간 사업실적을 평가하며, 이때 각종 사업에 참여한 교수 및 참여 연구인력의 경우 사업참여 결과가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관리부서와 협조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필요한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재산 및 회계

**제13조(수입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·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
6. 그 밖의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

**제14조(지출)**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·운영비
2. 산학협력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대학의 시설·운영 지원비
4.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
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
6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7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8.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**제15조(예산 및 결산보고)** ① 단장은 정관 제 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결과를 관련법령 및 지침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보고 및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예산 및 결산공고는 연간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,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회계관리)**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.

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.

**제17조(회계기관)**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.

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. 다만,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④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.

## 제4장 보칙

**제18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, 본교의 학칙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9조(비밀유지 의무)**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5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